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영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-3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5. .

발 의 자 : 조영덕, 김효철, 마동환,  
송병길, 유동균, 오진아,  
정형기, 차재홍(8명)

## 1. 개정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반직,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퇴직연도에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이 부여되어 사실상의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공로연수가 없고, 퇴직예정일 전 3월부터 퇴직 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정직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, 퇴직예정자는 퇴직연도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근무상황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 나누어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중복적인 예산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위해 제출된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“「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,」를 “「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,」로 개정함(안 제24조제12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실시(2012.5.9~2012.5.14)

- 의견수렴 반영

2) 예산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4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2항 중 “「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 까지」”를 “「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」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- ⑪ (생략)</p> <p>⑫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」제7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	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- ⑪ (현행과 같음)</p> <p>⑫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----- -----.</p>